

#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시행지침

제정 2002. 6. 21.  
개정 2003. 3. 20.  
개정 2004. 3. 16.  
개정 2007. 4. 4.  
개정 2011. 4. 12.  
개정 2013. 3. 5.  
개정 2016. 7. 5.  
개정 2016. 12. 6.  
개정 2017. 4. 4.  
개정 2021. 9. 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 라 한다.)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회비)** 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한 운영회비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17.4.4.>

**제3조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방법 등)** 규정 제4조 제2항의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건축사 선임은 대구광역시장의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방법은 제1호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임하되 명부에 등재된 자 모두가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때까지 하며, 이미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된 자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업무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1인을 선정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의 업무기간은 대구광역시장의 정한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등)**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청구는 허가권자와 협회가 체결하는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위·수탁 협약에 의한다.

## 부 칙 (2007.04.04 개정)

제1조 (시행일등) 지침 제2조에 의거 조정된 업무대행비 및 수수료는 2007년 4월 10일 업무대행 신청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04.12 개정)

제1조 (시행일등) 지침 제2조에 의거 조정된 업무대행비 및 수수료는 2011년 4월 18일 업무대행 신청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03.05 개정)

제1조 (시행일등) 본 지침은 2013.3.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07.05 개정)

제1조 (시행일등) ① 본 지침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의 시행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2016.12.06 개정)

제1조 (시행일등) ① 본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의 시행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2021.09.07. 개정)

제1조 (시행일등) ① 이 지침은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579호)의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 개정지침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이 최초로 작성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운영회비

(단위 : 원)

|      |                           |
|------|---------------------------|
| 운영회비 |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3% |
|------|---------------------------|